투자위험등급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코드 : 35139)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주)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cgiam.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6. 11. 2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 11. 20**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요약정보> 5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9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9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9
3. 모집예정금액 : 10조 좌 9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9
5. 인수에 관한 사항 10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10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1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11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14
4. 집합투자업자 14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4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5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16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7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20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22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25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28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30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34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9
1. 재무정보 39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42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45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51
1. 집합투자업자의 관한 사항 51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53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53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56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56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58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59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62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2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2

[참고] 펀드용어정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으니 실제 투자되는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성과보수를 정한 펀드인 경우 총보수.비용 기재 외의 성과보수가 별도로 부과되어 투자자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실제 부과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 증권(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및 예비포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 2026. 11. 2)

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코드: 35139)

투자위험등급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30% 이하를 국내주식에, 70% 이하를 국내채권**에 투자하며, 수익자는 **주식,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 이자율 변동 위험, 시장위험 등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KCGI 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 채권 등에 분산투자하는 채권혼합형 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재산의 70% 이하를 채권에 투자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에도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자는 주식,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 시장위험 등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 및 채권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 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0.5500%이내	0.8850%	0.5000%	0.7200%	0.8926%	146	241	339	549	1,15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1.0850%	0.7000%	1.1200%	1.0926%	112	228	349	605	1,337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2600%이내	0.6250%	0.2400%	0.5300%	0.6326%	65	133	203	354	791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0.7350%	0.3500%	0.7100%	0.7426%	76	155	238	414	924

주 1)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 2) 종류 A(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과 종류 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7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수수료선취-온라인)형과 종류 Ce(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3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30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2026.9.30 기준)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 년 25.11.03 ~ 26.11.02	최근 2 년 24.11.03 ~ 26.11.02	최근 3 년 23.11.03 ~ 26.11.02	최근 5 년 21.11.03 ~ 26.11.02	설정일이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02-09-16	9.43	14.62	13.42	6.79	5.08
비교지수(%)	2002-09-16	14.78	15.25	11.90	6.60	5.28
수익률 변동성(%)	2002-09-16	11.76	9.15	7.79	6.80	6.00

주 1) 비교지수 : KOSPI 25% + KIS 채권종합 01Y 65% + call 지수 1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혼합채권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채권	홍사욱	1974	책임 (상무)	22개	9,401억원	11.64%	-	11.64%	16.93%	20년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1개	500억원					
	조용익	1975	부책임 (이사)	21개	9,384억원	-	-			20년 10개월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1개	500억원					
주식	김홍석	1969	책임 (전무)	23개	14,778억원	12.03%	17.58%			15년 10개월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6개	1,002억원					

주 1) 이 집합투자기구의 주식운용은 주식운용팀, 채권운용은 채권운용팀이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투자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보유하고 있는 국내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table>
<tr><td rowspan="3"></td><td>신용위험</td><td colspan="3"></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해지(또는 해산)의 위험</td><td colspan="3">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td></tr>
<tr><td colspan="4">주 1) 주요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매입 방법</td><td colspan="2">· 17 시(오후 5 시)이전
: 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17 시(오후 5 시)경과 후
: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td><td>환매 방법</td><td>· 17 시(오후 5 시)이전
: 제 3 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제 4 영업일 지급
· 17 시(오후 5 시)경과 후
: 제 4 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제 5 영업일 지급</td></tr>
<tr><td>환매수수료</td><td colspan="4">해당사항 없음</td></tr>
<tr><td>기준가격</td><td colspan="4"><table><tr><td>산정방법</td><td>-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d></tr><tr><td>공시장소</td><td>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cgiam.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td></tr></table></td></tr>
<tr><td>과세</td><td colspan="4"><table><tr><th>구 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table>※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인 종류형의 경우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세제혜택의 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4">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주) (TEL. 1588-5533)</td></tr>
<tr><td>모집기간</td><td colspan="2">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td><td>모집(매출) 총액</td><td>10 조좌
(단,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td></tr>
<tr><td>효력발생일</td><td colspan="2">2026. 11. 20</td><td>존속 기간</td><td>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4">집합투자업자(www.kcgiam.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조</td></tr>
<tr><td>참조</td><td colspan="4">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51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 colspan="4">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table><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tr><td rowspan="3">판매수수료</td><td>수수료 선취(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7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 년 7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수수료선취-온라인형(Ae)의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3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므로, 2 년 3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tr><td>수수료 후취</td><td>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tr><td>수수료 미징구(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또는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7 개월 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 년 7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수수료미징구-</td></tr></table></td></tr>
</table>

	판매 경로	온라인(e)	**온라인형(Ce)의 경우 판매수수료선취-온라인형(Ae)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3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므로, 2 년 3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온라인형(Ae)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종류 S-T 및 S-P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것으로서 다른 종류(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고액거래자(종류 CI[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최초 납입금액이 20 억원 이상, 종류 S-I[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 등(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연금펀드전용(F-P)	개인연금, 퇴직연금용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이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cgi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cgiam.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cgiam.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코드 : 35139)**								
(종류) 클래스	종류A	종류C	종류Ce	종류CI	종류CF	종류CW	종류S	종류C-P	종류S-P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등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X381	AX380	AX382	AX383	AX384	AX385	AX386	AX387	AX388
(종류) 클래스	종류S-I	종류CF-P	종류C-P2	종류AG	종류CG	종류C-Pe	종류Ae	종류 C-Pe2	종류A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연금펀드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수수료선취-온라인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수수료선취-오프라인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X389	B6623	B6854	BP309	BP239	BT576	EJ072	EJ073	EL008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집합투자기구)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X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 좌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매사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2)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cgiam.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집(판매)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의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판매)합니다.

주1) 모집(판매)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코드 : 35139)**								
(종류) 클래스	종류A	종류C	종류Ce	종류CI	종류CF	종류CW	종류S	종류C-P	종류S-P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등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X381	AX380	AX382	AX383	AX384	AX385	AX386	AX387	AX388
(종류) 클래스	종류S-I	종류CF-P	종류C-P2	종류AG	종류CG	종류C-Pe	종류Ae	종류 C-Pe2	종류A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연금펀드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수수료선취-온라인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수수료선취-오프라인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X389	B6623	B6854	BP309	BP239	BT576	EJ072	EJ073	EL008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02. 9. 16	최초설정
2007. 8. 20	회사명 및 펀드명칭 변경 (한불종합금융->메리츠종합금융)
2008. 7. 28	영업양수도에 의한 집합투자자 변경(메리츠종합금융→메리츠자산운용)
2009. 5. 4	- 규약 변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적용으로 변경) - 투자신탁명 변경 : 메리츠 SOGEKO 안정혼합투자신탁1호 → 메리츠 SOGEKO 안정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010. 2. 18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규약변경 (세법 개정에 따른 변경/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2010. 5. 3	- 책임운용전문인력변경(채홍국->박순엽) - 비교지수변경
2010. 12. 16	- 펀드명변경, 투자비율 및 비교지수변경 - 투자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재 - 보수율인하(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보수 인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따른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제93조 및 제223조)
2011. 12. 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따른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2012. 10. 1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4항 개정사항 반영
2013. 6. 20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및 세법개정사항 반영 - 사옥이전에 따른 주소변경(시행일 : 2013. 7. 1)
2013. 11. 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2014. 5. 22	- 집합투자기구 명칭변경(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주요 운용전략 상세화 및 일부 문구 변경 - 최근 회계연도 6개월 경과에 따른 반기실적 기재 등
2014. 10. 3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집합투자규약(종류형으로 변경/주식편입비중 변경/신탁업자보수와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인하 등)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및 FATCA 반영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채권평가회사에 추가사항 반영 등
2014. 11. 4	- 운용펀드코드(35139), 종류C(AX380)로 변경적용
2015. 8. 6	- 집합투자규약(종류CF-P 신설)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등
2015. 8. 21	- 집합투자규약(종류C-P2 신설)
2015. 10. 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2016. 7. 2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
2016. 10. 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등
2017. 3. 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2017. 4. 29	- 집합투자규약 변경(종류AG, 종류CG 신설)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연금계좌세액공제)
2017. 7. 27	- 집합투자규약 변경(종류C-Pe 신설) - 최근 회계연도 6개월이상 경과에 따른 반기실적 기재 등
2017. 9. 2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등
2018. 10.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등 - 최근 펀드결산에 따른 위험등급 및 변동성 변경 등(4등급->5등급)
2019. 9. 16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
2019. 10.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최근 펀드결산에 따른 변동성 변경 등

2020. 10. 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제2항제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최근 펀드결산에 따른 펀드의 변동성 변경 및 투자위험 등급 변경(5등급->4등급)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등
2020. 12. 31	- 팀운용으로 변경 및 운용전문인력 변경 등
2021. 3. 12	- 집합투자규약 변경(환매수수료 삭제) 등
2021. 10. 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최근 펀드결산에 따른 펀드의 변동성 변경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
2022. 11. 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최근 펀드결산에 따른 펀드의 변동성 변경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내용 반영 등
2022. 12. 30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에 따른 변경
2023. 8. 18	- 대주주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사명,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및 주소지 변경 등
2023. 9. 26	- 최근 펀드결산에 따른 펀드의 변동성 및 투자위험 등급 변경 (4등급->5등급)
2023. 11. 9	- 운용전문인력변경에 따른 정정
2023. 11. 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제2항제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등
2024. 10. 4	- 최근 펀드 결산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최근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 97.5% VaR모형) 및 투자위험 등급 변경(5등급->4등급)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사항 반영(종류S관련 정의 개정)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 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등
2024. 11. 2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등
2025. 3. 6	- 집합투자규약 변경에 따른 정정(종류Ae, C-Pe2 신설)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사항 반영 등
2025. 3. 11	- 일부 종류형(C, Ce, CI, CF, CW, S, C-P) 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오기재 정정

2025. 5. 8	- 집합투자규약 변경에 따른 정정(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 변경, 종류A1 신설)
2025. 11. 1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최근 펀드결산에 따른 펀드의 변동성 변경 - 이익분배방식 변경에 따른 정정 등
2026. 2. 3	- 운용전문인력(채권) 추가에 따른 정정
2026. 10. 2	- 최근 펀드결산에 따른 펀드의 변동성 및 위험등급(4등급→3등급) 변경 등
2026. 11. 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등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One IFC 15층 (대표전화 : 1588-5533)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table>
<tr><th rowspan="3">구분</th><th rowspan="3">성명</th><th rowspan="3">생년</th><th rowspan="3">직위</th><th colspan="2">운용현황</th><th colspan="4">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혼합채권형)</th><th rowspan="3">운용
경력년수</th></tr>
<tr><th rowspan="2">집합투자기구
수</th><th rowspan="2">운용규모</th><th colspan="2">운용역</th><th colspan="2">운용사</th></tr>
<tr><th>최근1년</th><th>최근2년</th><th>최근1년</th><th>최근2년</th></tr>
<tr><td rowspan="6">채권</td><td rowspan="3">홍사욱</td><td rowspan="3">1974</td><td rowspan="3">책임
(상무)</td><td>22개</td><td>9,401억원</td><td rowspan="3">11.64%</td><td rowspan="3">-</td><td rowspan="3">11.64%</td><td rowspan="3">16.93%</td><td rowspan="3">20년</td></tr>
<tr><td colspan="2">성과보수가 있는 경우</td></tr>
<tr><td>1개</td><td>500억원</td></tr>
<tr><td colspan="10">주요이력사항</td></tr>
<tr><td colspan="10">- 2025.07 ~ 현재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매니저
- 2024.10 ~ 2025.06 케이알투자증권 BST본부
- 2005.11 ~ 2023.06 미래에셋자산운용 투자풀운용본부/채권운용본부
- 2004.04 ~ 2005.11 맵스자산운용 채권운용팀/채권운용
- 2000.03 ~ 2004.04 세종투신운용 리스크관리/채권운용</td></tr>
<tr><td rowspan="3">조용익</td><td rowspan="3">1975</td><td rowspan="3">부책임
(이사)</td><td>21개</td><td>9,384억원</td><td rowspan="3">-</td><td rowspan="3">-</td><td rowspan="3">11.64%</td><td rowspan="3">16.93%</td><td rowspan="3">20년
10개월</td></tr>
<tr><td colspan="2">성과보수가 있는 경우</td></tr>
<tr><td>1개</td><td>500억원</td></tr>
<tr><td colspan="10">주요이력사항</td></tr>
<tr><td colspan="10">- 2025.12 ~ 현재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매니저</td></tr>
</table>

<table>
<tr><td></td><td></td><td></td><td></td><td colspan="7">- 2022.03 ~ 2025.12 헤리티지자산운용 멀티에셋운용팀
- 2017.07 ~ 2022.03 흥국자산운용 채권운용팀/채권운용
- 2017.01 ~ 2017.07 HDC자산운용 채권운용팀/채권운용
- 2015.11 ~ 2016.12 흥국자산운용 채권운용팀/채권운용
- 2006.01 ~ 2015.11 베어링자산운용 채권운용/채권운용
- 2003.12 ~ 2006.01 DB자산운용 채권운용팀/채권리서치</td></tr>
<tr><td rowspan="5">주식</td><td rowspan="5">김홍석</td><td rowspan="5">1969</td><td rowspan="5">책임
(전무)</td><td colspan="2">23개</td><td colspan="2">14,778억원</td><td rowspan="3">12.03%</td><td rowspan="3">17.58%</td><td rowspan="3">11.64%</td><td rowspan="3">16.93%</td><td rowspan="3">15년
10개월</td></tr>
<tr><td colspan="4">성과보수가 있는 경우</td></tr>
<tr><td colspan="2">6개</td><td colspan="2">1,002억원</td></tr>
<tr><td colspan="9">주요이력사항</td></tr>
<tr><td colspan="9">- 2022.09 ~ 현재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 2021.01 ~ 2022.08 피아이엠자산운용
- 2013.05 ~ 2020.12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 투자운용본부
- 2005.07 ~ 2013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 주식운용매니저
- 2002.06 ~ 2004.11 도이치투신운용 리서치애널리스트
- 2000.11 ~ 2002.06스커더인베스트먼트 리서치애널리스트</td></tr>
</table>

주1)이 집합투자기구의 주식운용은 주식운용팀, 채권운용은 채권운용팀이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 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동종집합투자기구 운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률 왜곡이 있을 수 있어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table>
<tr><th>운 용 기 간</th><th colspan="2">책임운용전문인력</th><th>부책임운용전문인력</th></tr>
<tr><td>2006.04.03 ~ 2008.07.30</td><td colspan="2">-</td><td>-</td></tr>
<tr><td>2008.07.31 ~ 2010.05.02</td><td colspan="2">채홍국</td><td>-</td></tr>
<tr><td>2010.05.03 ~ 2013.06.20</td><td colspan="2">박순엽</td><td>-</td></tr>
<tr><td>2013.06.21 ~ 2020.12.30</td><td colspan="2">김홍석</td><td>-</td></tr>
<tr><td>2020.12.31 ~ 2022.12.29</td><td colspan="2" rowspan="2">2020.12.31 ~ 2023.11.08
김형석</td><td>박정임</td></tr>
<tr><td>2022.12.30 ~ 2023.11.08</td><td>-</td></tr>
<tr><td>2023.11.09 ~ 2026.02.02</td><td colspan="2">김홍석</td><td>-</td></tr>
<tr><td rowspan="2">2026.02.03 ~ 현재</td><td>주식</td><td>채권</td><td>채권</td></tr>
<tr><td>김홍석</td><td>홍사욱</td><td>조용익</td></tr>
</table>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혼합채권형)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7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 년 7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수수료선취-온라인형(Ae)의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3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므로, 2 년 3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또는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7 개월 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 년 7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의 경우 판매수수료선취-온라인형(Ae)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3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므로, 2 년 3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온라인형(Ae)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종류 S-T 및 S-P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것으로서 다른 종류(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고액거래자(종류 CI[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최초 납입금액이 20 억원 이상, 종류 S-I[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 등(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연금펀드전용(F-P)	개인연금, 퇴직연금용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이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 채권 등에 분산투자하는 채권혼합형 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재산의 70% 이하를 채권에 투자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에도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자는 주식,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 및 채권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비교지수 : KOSPI 25% + KIS채권종합01Y 65% + call지수 10%**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내용
①	**주식**	3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②	채권	70% 이하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을 제외한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시 신용등급이 A2-이상인 것.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기업어음)	(40% 이하)	
③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	집합투자증권	3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 제21항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고 한다)
⑤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⑥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주1)]	증권총액의 50%이하	
⑦	증권의 차입[주2)]	①~②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⑧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⑧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투자신탁재산의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함을 의미한다.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내지 ③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내지 ③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주식과 집합투자증권 등 투자의 총합계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로 한다.

3)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②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 제외
동일종목투자	각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간주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법 제84조제4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다.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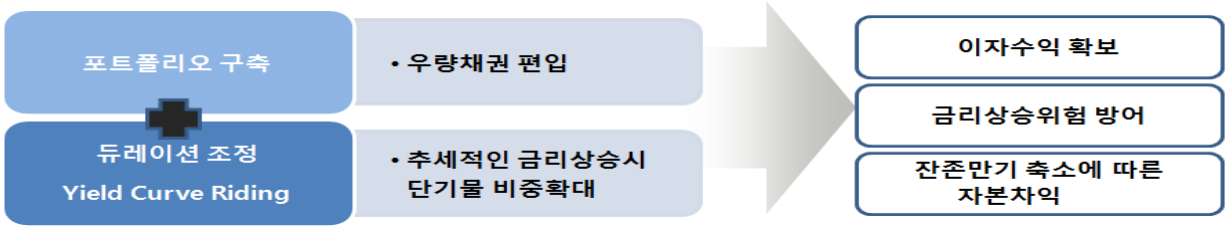
1) 개요

-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투자신탁입니다.
- 주식에 30% 이하, 채권에 70% 이하를 투자하면서 유가증권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과 배당금, 이자수령 등에 따른 이자소득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2) 주요투자전략

<채권부문>

- 투자신탁재산의 70% 이하를 국채, 통안증권, 우량 회사채 등 신용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듀레이션 조정전략(펀드 잔존만기 조정)
  금리 예측과 추세분석 결과에 따라 금리국면별(하락기, 횡보기, 상승기) 추세에 순응하는 탄력적인 듀레이션(가중평균만기) 조절로 위험관리

<주식부문>

- 투자신탁 재산의 30% 이하를 주식에 투자하여 자본 이득을 추구합니다.
- 지속 가능한 사업구조와 우수한 경영진을 지닌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고 장기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교지수*대비 초과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 포트폴리오전략
  ① 장기적인(3년이상) 관점에서 우수한 경영진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지닌 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② 업종 내 시장점유율, 성장성, 업종 내 경쟁력, 브랜드를 고려하여 기업 선정
  ③ 다른 기업의 진입이 불가능한 진입장벽(기술, 규모, 가격 등)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
  ④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할 능력을 갖춘 기업에 투자
  ⑤ 미래에 일등기업이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

⑥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면서 높은ROE(Return on Equity)*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기업에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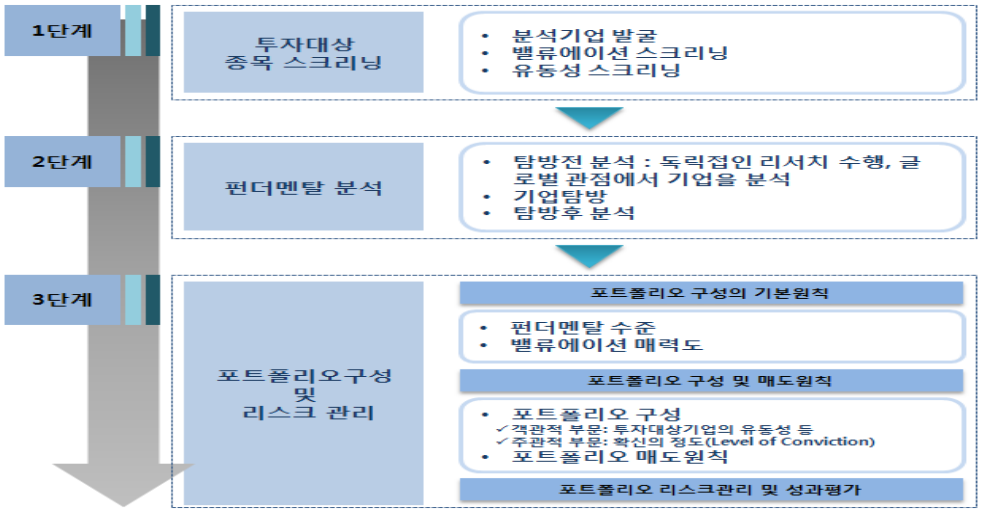
⑦ 주가가 성장성 및 경쟁력을 고려할 때 충분히 저평가 되어있는 기업에 투자

⑧ 이해할 수 있고 좋은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

⑨ 소외된 저평가 기업에 대한 발굴 및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제고

⑩ 건전한 지배구조와 우수한 경영진을 갖춘 기업에 투자

- 커버리지 기업 및 산업에 대해 심도 깊은 리서치를 수행하며 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경쟁적 우위, 그리고 향후 사업의 방향성 및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현금흐름, 수익성 등을 평가하여 밸류에이션과 비교 분석 합니다.
- 포트폴리오 선정프로세스



*** 듀레이션** :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가중 평균 만기로, 채권 가격의 이자율이 변화하는 민감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된다. 듀레이션이 길면 시중금리의 변동에 따른 가격의 변동도 크게 나타난다.

* ROE(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익률): 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기간이익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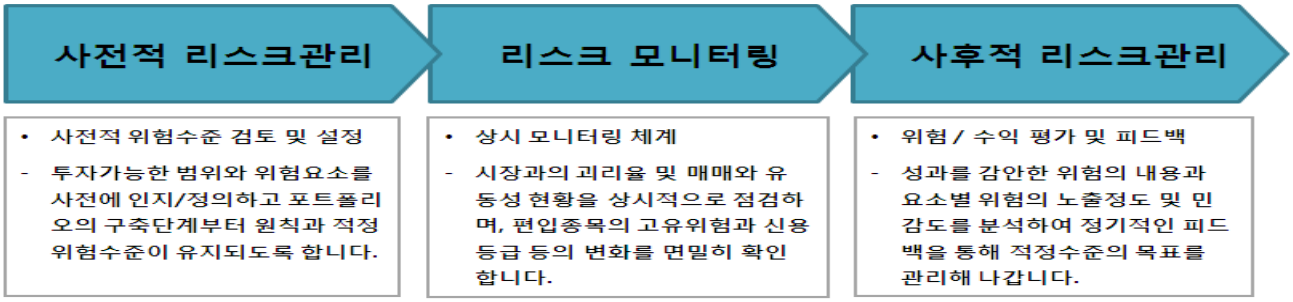
※ **비교지수 : KOSPI 25% + KIS채권종합01Y 65% + call지수 10%**

※ 선정사유 : 시장수익률과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KOSPI와 KIS채권종합01Y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자산내 편입비율을 감안하여 비교지수를 지정하였습니다.

* 상기 비교지수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위험관리 : 피드백(사전적리스크->리스크모니터링->사후적 리스크관리)을 통한 리스크에 대한 사전 통제력을 강화하여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시행합니다.



나. 수익구조

당 집합투자기구는 주식에 30% 이하, 채권에 70% 이하를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투자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증권을 차입할 경우, 차입자산을 매도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만큼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여할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자는 기회비용 부담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이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환매조건부 매도로 운용할 수 있으며, 환매조건부채권(RP)이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및 RP매입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재산을 정기예금, RP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기회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국내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에 따른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는 '11.매입,환매,전환기준'의 '나.환매'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 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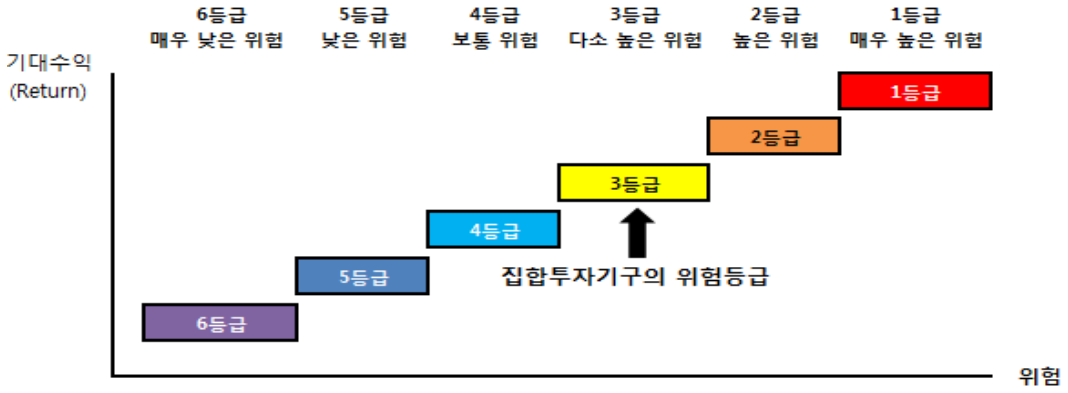
※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 : 24.81%**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재산의 30% 이하를 주식에, 70% 이하를 채권에 투자하는 혼합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 6개의 투자위험 등급 중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상기 위험수준을 이해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위험등급은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제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을 고려하여 투자위험등급을 분류 하였으며,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매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 이란?

수익률 변동성은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한 97.5% VaR 모형 사용을 의미합니다.



※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모형 사용)

등급	1(고위험)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저위험)
97.5% VaR	50%초과	50%이하	3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 펀드 위험등급 변경 내역

변경일	변경위험등급	변경사유
2016-07-02	3 등급 → 4 등급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변경
2018-10-02	4 등급 → 5 등급	펀드 결산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2020-10-08	5 등급 → 4 등급	펀드 결산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2023-09-26	4 등급 → 5 등급	펀드 결산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2024-10-04	5 등급 → 4 등급	펀드 결산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2026-10-02	4 등급 → 3 등급	펀드 결산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집합투자기구의 가입가능한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급비율(%)						
보수구조	종류A	종류C	종류Ce	종류CI	종류CF	종류CW	종류S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등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투자자의 자격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규약 제40조 제2항 제1호)가 징구되는 집합투자증권	가입제한이 없음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 집합투자증권	최초 납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투자자용 집합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전용 집합투자증권	Wrap account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정금전신탁 전용 집합투자증권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종류S-T 및 S-P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55%이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후취판매수수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구분	지급비율(%)				
보수구조	종류C-P	종류S-P	종류S-I	종류CF-P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연금펀드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투자자의 자격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종류S-T 및 S-P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종류S-T 및 S-P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고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및 IRP(개인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이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류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고액투자자용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퇴직연금계좌)개설한 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 전용 집합투자증권	
선취판매 수수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후취판매 수수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구분	지급비율(%)					
보수구조	종류AG	종류CG	종류C-Pe	종류Ae	종류C-Pe2	종류A1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수수료선취-온라인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수수료선취-오프라인
투자자의 자격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로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 판매 수수료•보수 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증권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 판매 수수료•보수 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 전용으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규약 제40조 제2항 제4호)가 징구되는 집합투자증권
선취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0.27%이내	없음	없음	납입금액의 0.26%이내	없음	납입금액의 0.80%이내
후취판매 수수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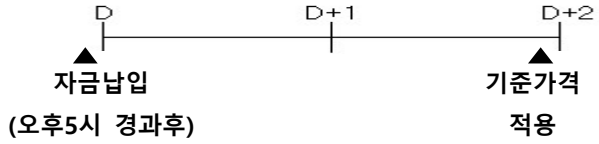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정해진 범위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단,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단,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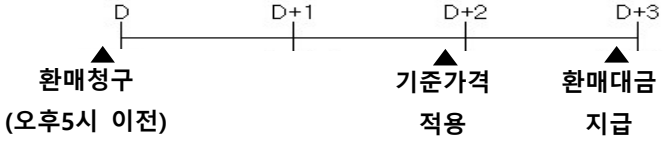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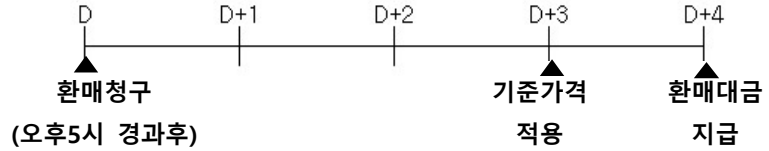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온라인을 통해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나)**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3) 환매(매입)청구시 취소 또는 정정

환매(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4)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 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5)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6)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투자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또는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10)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중도환매를 허용하는 투자신탁입니다.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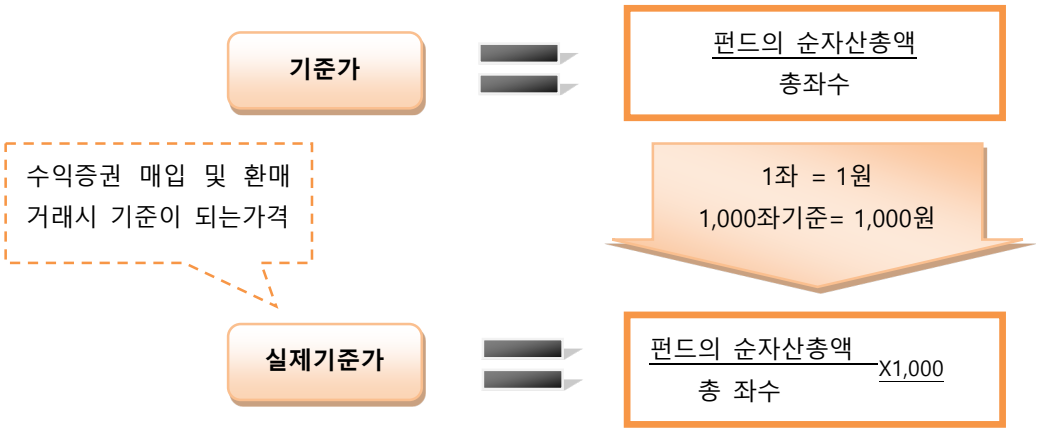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cgiam.com) ·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주1)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방법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 가 방 법
①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 외화표시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전날에 해당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④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⑤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평균가격으로 평가
⑥ 외화표시채무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⑧ 장내파생상품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외국의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으로 평가
⑨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⑩ 파생결합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회사 및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⑪ 상장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⑫ 비상장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모자형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⑬ 외화표시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 전날에 공고(또는 제공)된 기준가격으로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선취판매수수료(규약 제40조 제2항 제1호)가 징구되는 집합투자증권	납입금액의 0.55%이내	-	-	-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가입제한이 없음	-	-	-	-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 수익증권	-	-	-	-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최초 납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투자자용 집합투자증권	-	-	-	-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전용 집합투자증권	-	-	-	-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Wrap account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정금전신탁 전용 집합투자증권	-	-	-	-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종류S-T 및 S-P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	-	-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종류S-T 및 S-P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	-	-	-

S-I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종류S-T 및 S-P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고액투자자용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	-	-	-
CF-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연금펀드전용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고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개설한 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 전용 집합투자증권	-	-	-	-
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이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	-	-	-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로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 판매 수수료·보수 보다 낮은 판매수수료·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증권	납입금액의 0.27%이내	-	-	-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 판매 수수료·보수 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증권	-	-	-	-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으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	-	-	-	-
Ae	수수료선취-온라인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 집합투자증권	납입금액의 0.26%이내	-	-	
C-Pe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	-	-	-	-
A1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선취판매수수료(규약 제40조 제2항 제4호)가 징구되는 집합투자증권	납입금액의 0.80%이내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 및 후취판매수수료는 정해진 범위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A	C	Ce	Cl	CF	CW	S	C-P	S-P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등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집합투자업자보수	0.3500	0.3500	0.3500	0.3500	0.3500	0.3500	0.3500	0.3500	0.3500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5000	0.7000	0.3500	0.0500	0.0300	0.0000	0.1500	0.6000	0.1200	
신탁회사보수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50	0.0150	0.0150	0.0150	0.0150	0.0150	0.0150	0.0150	0.0150	
총 보수	0.8850	1.0850	0.7350	0.4350	0.4150	0.3850	0.5350	0.9850	0.5050	
기타비용	0.0076	0.0076	0.0076	-	-	-	0.0076	0.0076	0.0076	사유 발생시
총보수· 비용	0.8926	1.0926	0.7426	0.4350	0.4150	0.3850	0.5426	0.9926	0.5126	-
(동종유형 총 보수)	0.7200	1.1200	0.7100	-	-	-	-	-	-	-
총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0.8926	1.0926	0.7426	0.4350	0.4150	0.3850	0.5426	0.9926	0.5126	-
증권거래비용	0.1813	0.1873	0.1897	-	-	-	0.1834	0.1903	0.1902	사유 발생시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 시기
	S-I	CF-P	C-P2	AG	CG	C-Pe	Ae	C-Pe2	A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연금펀드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수수료선취-온라인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집합투자업자보수	0.3500	0.3500	0.3500	0.3500	0.3500	0.3500	0.3500	0.3500	0.3500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0200	0.0100	0.5000	0.2500	0.4000	0.3000	0.2400	0.2500	0.4100	
신탁회사보수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50	0.0150	0.0150	0.0150	0.0150	0.0150	0.0150	0.0150	0.0150	
총 보수	0.4050	0.3950	0.8850	0.6350	0.7850	0.6850	0.6250	0.6350	0.7950	
기타비용	-	-	0.0076	-	-	0.0076	0.0076	0.0076	0.0076	사유 발생시
총보수· 비용	0.4050	0.3950	0.8926	0.6350	0.7850	0.6926	0.6326	0.6426	0.8026	-
(동종유형 총 보수)	-	-	-	-	-	-	0.5300	-	0.7200	-

총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0.4050	0.3950	0.8926	0.6350	0.7850	0.6926	0.6326	0.6426	0.8026	-
증권거래비용	-	-	0.1818	-	-	0.1906	0.1948	0.1907	0.1849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5.09.16 ~ 2026.09.15]

* 기타비용 :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보관대리인보수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5.09.16 ~ 2026.09.15]

* 증권거래비용 :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SWAP매매수수료, 대차관련수수료, REPO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매매수수료, 해외파생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증권거래비용	254,410

* 금융비용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금융비용	-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단, 2013년 8월 28일까지 발생분에 한함)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 (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2026.09.30기준)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명칭(종류)		1년	2년	3년	5년	10년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146	241	339	549	1,152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112	228	349	605	1,337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76	155	238	414	924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45	91	140	244	549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등	43	87	134	233	525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39	81	124	216	487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56	114	174	304	682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102	208	318	551	1,221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53	107	165	287	645
S-I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	42	85	130	227	512
CF-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연금펀드전용	40	83	127	222	500
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91	187	286	496	1,103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92	159	230	381	819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80	164	252	438	975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71	145	222	387	864

Ae	수수료선취-온라인	65	133	203	354	791
C-Pe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66	135	206	359	803
A1	수수료선취-오프라인	82	168	257	447	996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종류 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수익증권의 경우 보유기간을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산정하였으며, 후취판매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26년 9월 15일 부터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한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 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1.1 이후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원청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이익 지급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합니다. (※2024년말까지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에**

서 환급 받아 세전 기준가로 환원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집합투자기구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종류C-P(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수익증권, 종류S-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수익증권 및 종류C-Pe(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수익증권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금액 한도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 연간 저축금액 중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새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1일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계좌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추가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제외) 연금소득이 1천5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4년 1월1일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의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종류 C-P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종류 C-Pe2(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수익증권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5%(지방소득세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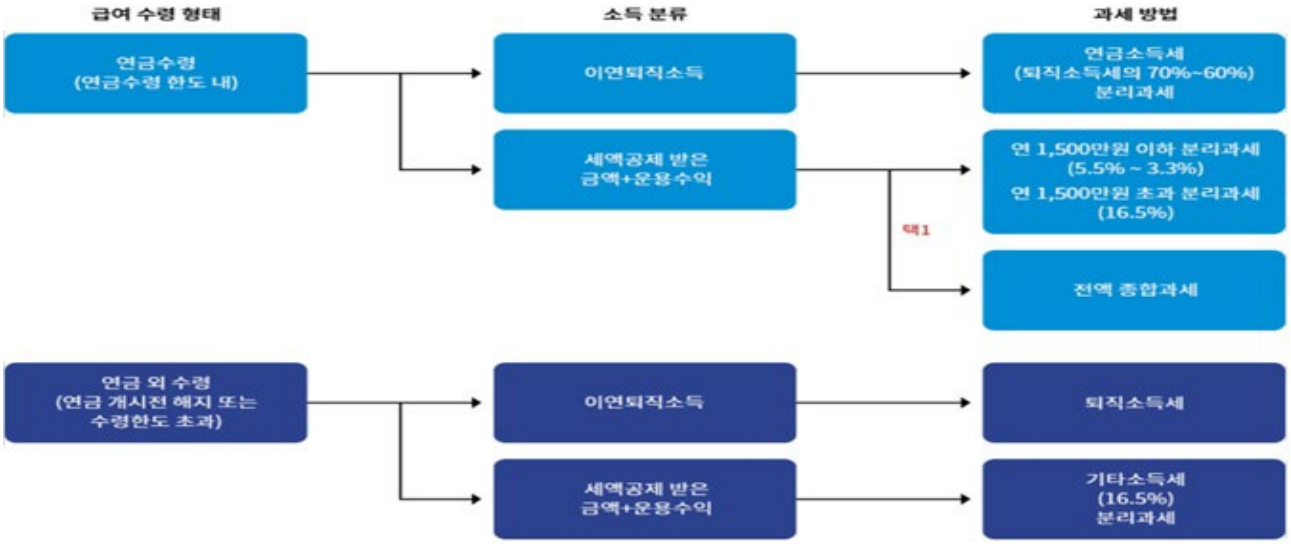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2)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시 연금수령 방법 등에 따라 과세

3) 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 연금 수령, 연금외 수령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름.



주1)2015년 이후 수령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세율임.

주2)연금수령 한도산식, 연금소득세 세율은 연금저축과 동일

<자료출처>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

※ 퇴직연금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준가는 일반기준가와 과표기준가가 있으며, 이들 가격은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cgiam.com)·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일반기준가란,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과 채권 등의 모든 자산을 그날의 시가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채권의 이자와 주식의 배당금 등의 수입을 추가하여 자산총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에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차감하여 순자산총액을 산출하고, 그 날의 수익증권(또는 주권)의 총좌수로 나누어 기준가격이 산출됩니다.

과표기준가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수익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등은 과세대상 수익이므로 이를 기초로 과표산정을 위해 산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즉 거래는 기준가격으로 하고 과세는 과표기준가격으로 합니다.

(7) 투자자에 대한 과세 사례(예시)

(단위:원)

거래일자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거래구분	좌수	입출금금액
연초	1,000	1,000	입금	10,000,000좌	10,000,000
연말	1,300	1,200	출금	10,000,000좌	13,000,000

신탁재산이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투자이익의 구성이 아래와 같은 경우, 그 그 귀속자가 법인 또는 개인(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를 가정)인 경우 각각의 투자신탁의 소득·원천징수세액·결정세액·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이자·배당	매매·평가이익
채권	1,000,000	-1,000,000
주식	2,000,000	1,000,000

① 투자이익과 과세대상이익(채권과 주식 이자·배당 및 채권의 매매평가이익의 합)은 각각 3,000,000원과 2,000,000원입니다.

②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대상소득=투자신탁이익(개인·법인동일)→ 2,000,000원
- 원천징수세액 = 2,000,000*15.4% =308,000원

③ 결정세액(납세의무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액) 및 납부세액의 계산 : 개인과 법인의 경우

(단위:원)

구분	개인
결정세액	투자신탁이익 x 누진세율(T) =2,000,000 x T
납부세액	결정세액-원천징수세액 =2,000,000 x T – 308,000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24 기(2025.09.16 - 2026.09.15)	삼덕회계법인	적정
제 23기(2024.09.16 - 2025.09.15)	삼덕회계법인	적정
제 22기(2023.09.16 - 2024.09.15)	삼덕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현황

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단위: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24 기	제 23기	제 22기
	(2026.09.15)	(2025.09.15)	(2024.09.15)
운용자산	127,860,318,261	139,314,890,626	40,733,970,046
증권	127,665,312,504	138,835,848,934	40,484,155,528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95,005,757	479,041,692	249,814,518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822,972,860	642,624,656	305,331,096
자산총계	128,683,291,121	139,957,515,282	41,039,301,142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359,052,290	436,505,234	131,378,743
부채총계	359,052,290	436,505,234	131,378,743
원본	107,778,285,866	121,162,640,924	39,369,724,727
수익조정금	-3,526,623,963	9,233,285,448	83,674,296
이익잉여금	24,072,576,928	9,125,083,676	1,454,523,376
자본총계	128,324,238,831	139,521,010,048	40,907,922,399

(단위: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24 기	제 23기	제 22기
	(2025.09.16 - 2026.09.15)	(2024.09.16 - 2025.09.15)	(2023.09.16 - 2024.09.15)
운용수익	25,294,318,072	9,697,601,538	3,557,808,190
이자수익	2,927,411,853	1,441,176,240	1,081,792,083
배당수익	339,657,312	357,486,708	288,996,766
매매/평가차익(손)	22,027,248,907	7,898,938,590	2,187,019,341
기타수익	40,303,679	1,868,101	0
운용비용	1,221,871,220	555,659,937	365,076,889

관련회사 보수	1,221,871,220	555,659,937	365,076,889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40,173,603	18,726,026	11,549,734
당기순이익	24,072,576,928	9,125,083,676	3,181,181,567
매매회전율	347.68	120.09	87.10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위 재무재표는 운용 펀드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재무상태표의 부채 및 자본항목과 손익계산서의 비용항목은 각 개별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항목 값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 3)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2025.09.16 - 2026.09.15)			전기(2024.09.16 - 2025.09.15)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236,990	237.2566	0.1001	61,923	62	0.0999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7,667	7.6665	0.1	868	0.8684	0.1
부동산	0	0	0	0	0	0
장내파생상품	0	0	0	0	0	0
장외파생상품	0	0	0	0	0	0
기타(REPO,대차,콜 등)	5,507,442	9	0.0002	2,227,556	3	0.0001
합계	5,752,099	254	0.0044	2,290,347	66	0.0029

주 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이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598,085	104,515	854,906	132,746	38,181	347.68	32.65

나. 재무상태표

[단위:원]

과 목	제24기(2026.09.15)		제23기(2025.09.15)		제22기(2024.09.15)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195,005,757		479,041,692		249,814,518
1. 현금및현금성자산	195,005,757		479,041,692		249,814,518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18,656,220,411		24,800,000,000		4,500,000,000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16,700,000,000		24,800,000,000		4,500,000,000	
3. 매입어음	1,956,220,411					
4. 대출금						
유가증권		109,009,092,093		114,035,848,934		35,984,155,528
1. 지분증권	35,170,023,300		39,665,874,950		10,751,679,740	
2. 채무증권	73,720,422,728		74,369,973,984		25,232,475,788	
3. 수익증권	118,646,065					
4. 기타유가증권						

과 목	제24기(2026.09.15)		제23기(2025.09.15)		제22기(2024.09.15)	
	금 액		금 액		금 액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822,972,860		642,624,656		305,331,096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05,239,896		87,073,466		105,202,119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575,063,629		432,990,897		181,815,979	
4. 미수배당금	6,756,650		29,198,900			
5. 기타미수입금	35,912,685		93,361,393		18,312,998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128,683,291,121		139,957,515,282		41,039,301,142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359,052,290		436,505,234		131,378,743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71,762,873		186,578,196		36,593,841	
4. 수수료미지급금	287,289,417		249,927,038		94,784,902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359,052,290		436,505,234		131,378,743
자 본						
1. 원 본	107,778,285,866		121,162,640,924		39,369,724,727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20,545,952,965		18,358,369,124		1,538,197,672	
(발행좌수 당기: 107,778,285,866 좌	이익잉여금	24,072,576,928		9,125,083,676		1,454,523,376
전기: 121,162,640,924 좌	수익조정금	-3,526,623,963		9,233,285,448		83,674,296
전전기: 39,369,724,727 좌)						
(기준가격 당기: 1,187.73 원						
전기: 1,000.00 원						
전전기: 1,000.00 원)						
자 본 총 계		128,324,238,831		139,521,010,048		40,907,922,399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28,683,291,121		139,957,515,282		41,039,301,142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과 목	제24기(2025.09.16-2026.09.15)		제23기(2024.09.16-2025.09.15)		제22기(2023.09.16-2024.09.15)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3,267,069,165		1,798,662,948		1,370,788,849
1. 이 자 수 익	2,927,411,853		1,441,176,240		1,081,792,083	
2. 배당금수익	339,657,312		357,486,708		288,996,766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6,977,119,151		9,523,483,336		3,688,756,909
1. 지분증권매매차익	23,549,184,161		9,225,934,197		2,866,413,801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122,020,297		295,491,437		822,327,717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2,877,377,794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1					
7. 기타거래차익	428,536,898		2,057,702		15,391	

과 목	제24기(2025.09.16-2026.09.15)		제23기(2024.09.16-2025.09.15)		제22기(2023.09.16-2024.09.15)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4,909,566,565		1,622,676,645		1,501,737,568
1. 지분증권매매차손	3,740,990,619		1,322,614,832		1,414,889,33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875,497,585		270,136,685		86,835,633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293,078,361		29,925,128		12,605	
운 용 비 용		1,262,044,823		574,385,963		376,626,623
1. 운용수수료	475,413,194		212,421,274		138,646,325	
2. 판매수수료	719,292,398		331,101,017		218,508,417	
3. 수탁수수료	27,165,628		12,137,646		7,922,147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40,173,603		18,726,026		11,549,734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24,072,576,928		9,125,083,676		3,181,181,567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223352754		0.075312684		0.080802738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9.16 - 2026.09.15	1,200	1,200	1,595	1,742	1,724	1,909	1,071	1,286
2024.09.16 - 2025.09.15	384	384	1,202	1,339	386	422	1,200	1,398
2023.09.16 - 2024.09.15	420	409	109	114	145	148	384	410

주 1) 2025.09.16 - 2026.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77,740,134 좌/211,106,754 원

주 2) 2024.09.16 - 2025.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8,086,153,553 좌/18,086,153,553 원

주 3) 2023.09.16 - 2024.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465,539,855 좌/1,465,851,430 원

가. 종류형펀드

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종류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9.16 - 2026.09.15	530	530	598	651	733	809	396	471
2024.09.16 - 2025.09.15	119	119	613	679	202	220	530	611
2023.09.16 - 2024.09.15	144	138	30	29	55	53	119	123

주 1) 2025.09.16 - 2026.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8,198,776 좌/9,742,081 원

주 2) 2024.09.16 - 2025.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7,920,078,551 좌/7,920,078,551 원

주 3) 2023.09.16 - 2024.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84,114,994 좌/384,159,997 원

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종류A(수수료선취-오프라인)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9.16 - 2026.09.15	326	326	236	260	404	449	158	188
2024.09.16 - 2025.09.15	89	89	321	358	84	92	326	377
2023.09.16 - 2024.09.15	97	93	25	26	34	34	89	93

주 1) 2025.09.16 - 2026.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340,618 좌/3,977,205 원

주 2) 2024.09.16 - 2025.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037,584,463 좌/5,037,584,463 원

주 3) 2023.09.16 - 2024.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33,263,823 좌/333,308,709 원

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종류Ce(수수료미징구-온라인)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9.16 - 2026.09.15	113	113	305	342	243	279	175	209
2024.09.16 - 2025.09.15	32	32	128	140	46	50	113	131
2023.09.16 - 2024.09.15	31	30	33	35	33	34	32	33

주 1) 2025.09.16 - 2026.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2,152,689 좌/50,133,366 원

주 2) 2024.09.16 - 2025.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712,208,749 좌/1,712,208,749 원

주 3) 2023.09.16 - 2024.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22,440,596 좌/122,458,699 원

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종류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9.16 - 2026.09.15	2.04	2.04	1.47	1.58	1.69	1.80	1.83	2.19
2024.09.16 - 2025.09.15	0.81	0.81	2.22	2.48	0.99	1.09	2.04	2.37
2023.09.16 - 2024.09.15	0.73	0.70	0.24	0.25	0.16	0.16	0.81	0.85

주 1) 2025.09.16 - 2026.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894,609 좌/1,062,512 원

주 2) 2024.09.16 - 2025.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2,154,765 좌/32,154,765 원

주 3) 2023.09.16 - 2024.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666,796 좌/3,667,403 원

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종류C-P(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9.16 - 2026.09.15	98	98	20	21	16	18	103	122
2024.09.16 - 2025.09.15	99	99	10	10	11	11	98	113
2023.09.16 - 2024.09.15	106	101	5	5	11	11	99	103

주 1) 2025.09.16 - 2026.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4,800,701 좌/17,582,495 원

주 2) 2024.09.16 - 2025.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502,881,586 좌/1,502,881,586 원

주 3) 2023.09.16 - 2024.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68,706,356 좌/368,752,798 원

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종류S-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9.16 - 2026.09.15	1.89	1.89	0.51	0.53	0.46	0.53	1.94	2.32
2024.09.16 - 2025.09.15	1.86	1.86	1.31	1.37	1.28	1.35	1.89	2.19
2023.09.16 - 2024.09.15	1.98	1.91	1.45	1.43	1.56	1.59	1.86	1.96

주 1) 2025.09.16 - 2026.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189,645 좌/1,413,288 원

주 2) 2024.09.16 - 2025.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0,097,847 좌/30,097,847 원

주 3) 2023.09.16 - 2024.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9,757,049 좌/9,758,690 원

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종류C-P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9.16 - 2026.09.15	0.55	0.55	1.38	1.64	0.00	0.00	1.92	2.29
2024.09.16 - 2025.09.15	0.24	0.24	0.46	0.52	0.16	0.16	0.55	0.63
2023.09.16 - 2024.09.15	0.22	0.21	0.04	0.04	0.02	0.02	0.24	0.25

주 1) 2025.09.16 - 2026.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70,660 좌/559,121 원

주 2) 2024.09.16 - 2025.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8,481,865 좌/8,481,865 원

주 3) 2023.09.16 - 2024.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974,460 좌/974,591 원

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종류C-Pe(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9.16 - 2026.09.15	84	84	61	67	40	45	105	125
2024.09.16 - 2025.09.15	52	52	52	57	20	22	84	97
2023.09.16 - 2024.09.15	45	43	17	18	10	10	52	54

주 1) 2025.09.16 - 2026.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0,577,823 좌/60,053,826 원

주 2) 2024.09.16 - 2025.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310,713,305 좌/1,310,713,305 원

주 3) 2023.09.16 - 2024.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42,733,573 좌/242,770,543 원

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종류Ae(수수료선취-온라인)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9.16 - 2026.09.15	36	36	86	92	79	89	43	51
2024.09.16 - 2025.09.15	0	0	39	42	3	3	36	40

주 1) 2025.09.16 - 2026.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4,749,720 좌/17,543,456 원

주 2) 2024.09.16 - 2025.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80,807,497 좌/380,807,497 원

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종류C-Pe2(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9.16 - 2026.09.15	6	6	28	31	9	10	26	31
2024.09.16 - 2025.09.15	0	0	7	7	0.55	0.60	6	7

주 1) 2025.09.16 - 2026.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4,406,600 좌/17,101,571 원

주 2) 2024.09.16 - 2025.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69,310,752 좌/69,310,752 원

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종류A1(수수료선취-오프라인)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9.16 - 2026.09.15	14	14	63	76	10	11	67	80
2024.09.16 - 2025.09.15	0	0	14	14	0	0	14	15

주 1) 2025.09.16 - 2026.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6,904,634 좌/31,937,833 원

주 2) 2024.09.16 - 2025.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81,834,173 좌/81,834,173 원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세전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5.11.03 ~ 26.11.02	24.11.03 ~ 26.11.02	23.11.03 ~ 26.11.02	21.11.03 ~ 26.11.02	02.09.16 ~ 26.11.02
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10.60	15.85	14.64	7.94	5.64
비교지수	14.78	15.25	11.90	6.60	5.28
수익률변동성(%)	11.76	9.15	7.79	6.80	6.00
종류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9.43	14.62	13.42	6.79	5.08
비교지수	14.78	15.25	11.90	6.60	5.28
수익률변동성(%)	11.76	9.15	7.79	6.80	6.00
종류A(수수료선취-오프라인)	9.64	14.85	13.64	7.00	4.54
비교지수	14.78	15.25	11.90	6.60	4.53
수익률변동성(%)	11.76	9.15	7.79	6.80	6.00
종류Ce(수수료미징구-온라인)	9.80	15.02	13.81	7.16	4.54
비교지수	14.78	15.25	11.90	6.60	4.59
수익률변동성(%)	11.76	9.15	7.79	6.80	6.04
종류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10.02	15.24	14.03	7.37	4.24
비교지수	14.78	15.25	11.90	6.60	4.55

수익률변동성(%)	11.76	9.15	7.79	6.80	6.08
종류C-P(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9.53	14.74	13.53	6.90	4.26
비교지수	14.78	15.25	11.90	6.60	4.57
수익률변동성(%)	11.76	9.15	7.79	6.80	6.04
종류S-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10.05	15.28	14.07	7.41	4.24
비교지수	14.78	15.25	11.90	6.60	4.55
수익률변동성(%)	11.76	9.15	7.79	6.80	6.08
종류C-P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9.64	14.85	13.65	7.01	5.30
비교지수	14.78	15.25	11.90	6.60	4.84
수익률변동성(%)	11.76	9.15	7.79	6.80	6.33
종류C-Pe(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9.86	15.07	13.87	7.21	5.57
비교지수	14.78	15.25	11.90	6.60	4.82
수익률변동성(%)	11.76	9.15	7.79	6.80	6.30
종류Ae(수수료선취-온라인)	9.92				16.09
비교지수	14.78				17.87
수익률변동성(%)	11.76				9.78
종류C-Pe2(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9.91				16.61
비교지수	14.78				18.83
수익률변동성(%)	11.76				9.90
종류A1(수수료선취-오프라인)	9.74				14.92
비교지수	14.78				19.43
수익률변동성(%)	11.76				10.43

주1) 비교지수 : KOSPI 25% + KIS채권종합01Y 65% + call지수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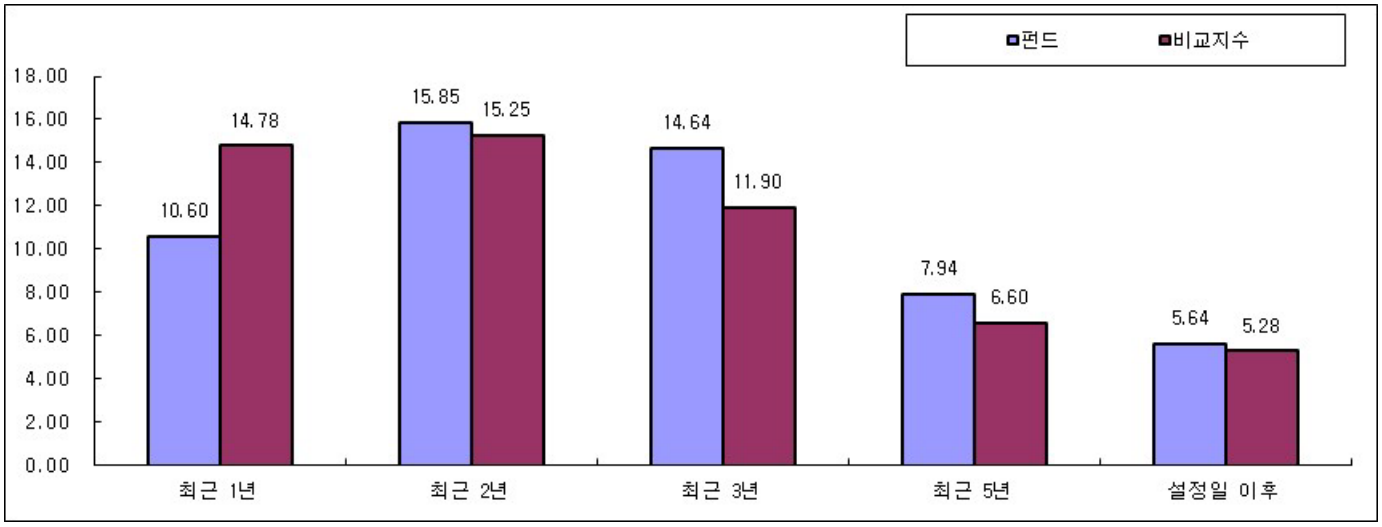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연평균수익률정보는 신고서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과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5)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6)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말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세전기준)

(단위:%)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25.11.03 ~ 26.11.02	24.11.03 ~ 25.11.02	23.11.03 ~ 24.11.02	22.11.03 ~ 23.11.02	21.11.03 ~ 22.11.02
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10.60	21.34	12.29	6.28	-8.48
비교지수	14.78	15.73	5.51	3.55	-5.13
종류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9.43	20.06	11.09	5.14	-9.48
비교지수	14.78	15.73	5.51	3.55	-5.13
종류A(수수료선취-오프라인)	9.64	20.30	11.31	5.35	-9.30
비교지수	14.78	15.73	5.51	3.55	-5.13
종류Ce(수수료미징구-온라인)	9.80	20.48	11.48	5.51	-9.16
비교지수	14.78	15.73	5.51	3.55	-5.13
종류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10.02	20.71	11.70	5.72	-8.98
비교지수	14.78	15.73	5.51	3.55	-5.13
종류C-P(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9.53	20.18	11.20	5.25	-9.39
비교지수	14.78	15.73	5.51	3.55	-5.13
종류S-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10.05	20.75	11.73	5.75	-8.95
비교지수	14.78	15.73	5.51	3.55	-5.13
종류C-P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9.64	20.31	11.32	5.36	-9.29
비교지수	14.78	15.73	5.51	3.55	-5.13
종류C-Pe(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9.86	20.53	11.53	5.56	-9.11
비교지수	14.78	15.73	5.51	3.55	-5.13
종류Ae(수수료선취-온라인)	9.92	16.40			
비교지수	14.78	14.32			
종류C-Pe2(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9.91	16.14			
비교지수	14.78	14.60			
종류A1(수수료선취-오프라인)	9.74				
비교지수	14.78				

주1) 비교지수 : KOSPI 25% + KIS채권종합01Y 65% + call지수 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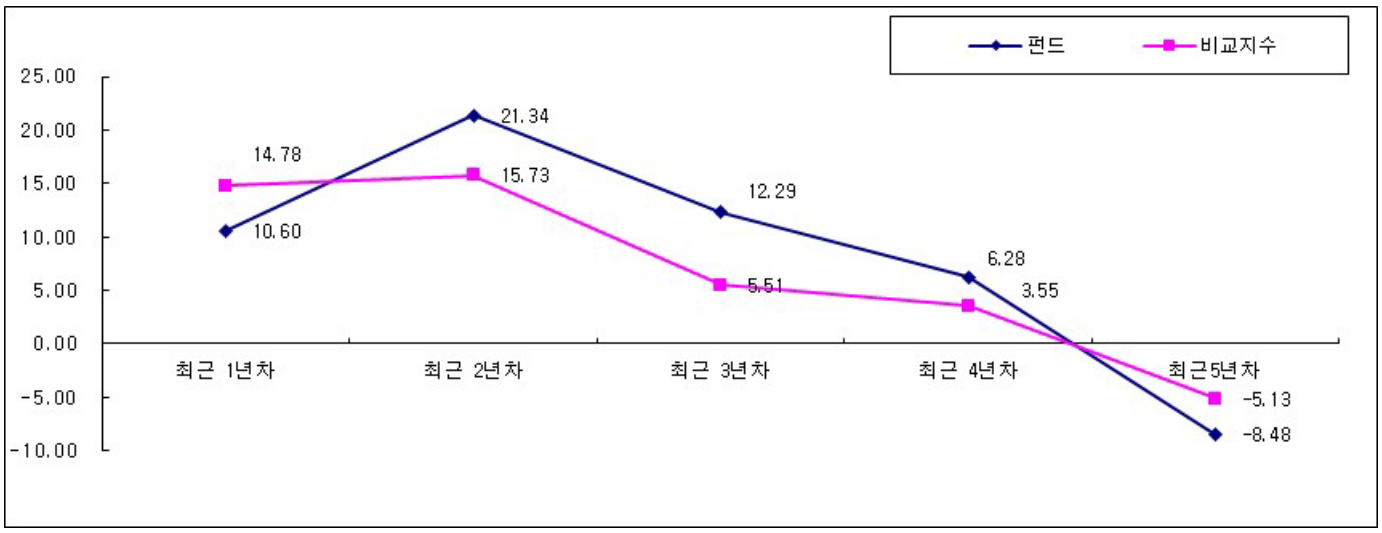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6.9.15 현재 /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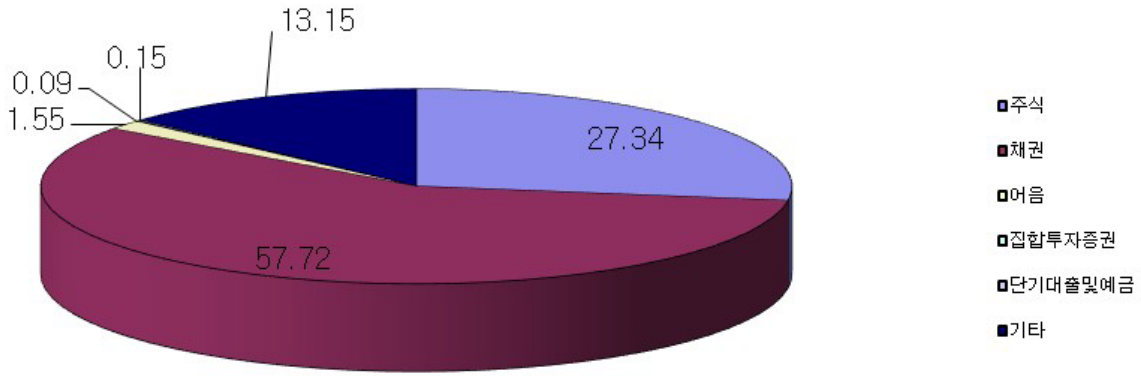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352	743	20	1	0	0	0	0	0	2	169	1,286
	(27.34)	(57.72)	(1.55)	(0.09)	(0.00)	(0.00)	(0.00)	(0.00)	(0.00)	(0.15)	(13.15)	(100.00)
합계	352	743	20	1	0	0	0	0	0	2	169	1,286
	(27.34)	(57.72)	(1.55)	(0.09)	(0.00)	(0.00)	(0.00)	(0.00)	(0.00)	(0.15)	(13.15)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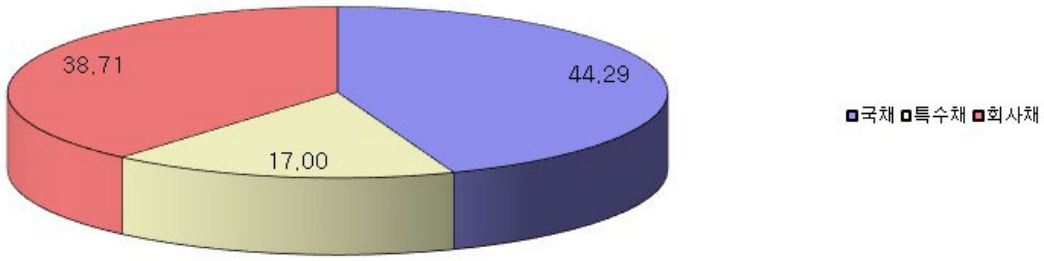


1)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 현황

[2026.9.15 현재 / 단위 : 억원, %]

구분	채권종류						합 계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통화채	회사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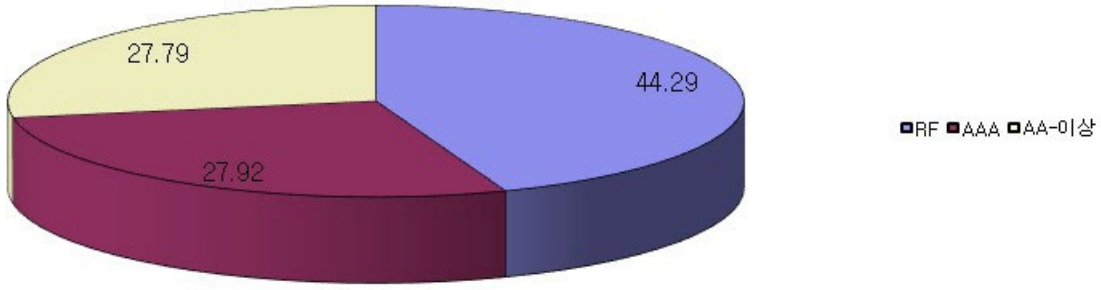
금액/비중	329	0	126	0	0	287	743
	(44.29)	(0.00)	(17.00)	(0.00)	(0.00)	(38.71)	(100.00)



2) 국내 채권신용평가등급별 구성 현황

[2026.9.15 현재 /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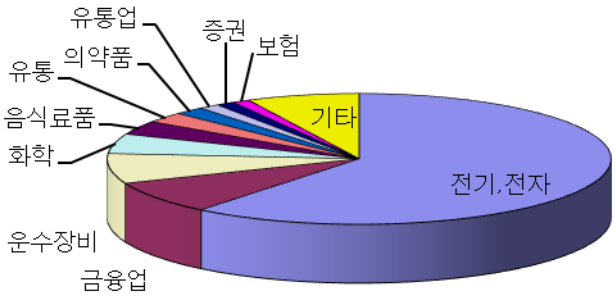
구분	신용평가등급									합 계
	RF	AAA	AA-이상	A-이상	BBB-이상	BB-이상	B-이상	C,CC,CCC	무등급	
금액/비중	329	207	206	0	0	0	0	0	0	743
	(44.29)	(27.92)	(27.79)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3) 국내 주식 업종 별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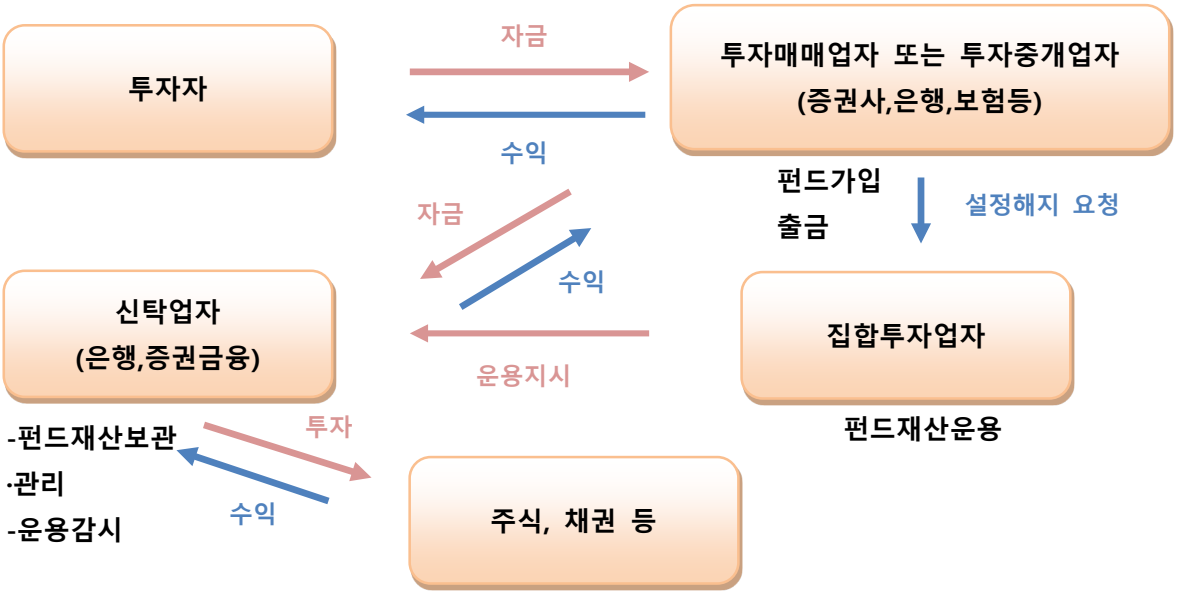
[2026.9.15 현재 / 단위 : 억원, %]

	업종명	평가액	보유비율
1	전기,전자	214	60.76
2	금융업	29	8.13
3	운수장비	26	7.38
4	화학	17	4.88
5	음식료품	12	3.48
6	유통	9	2.57
7	의약품	7	1.95
8	유통업	5	1.31
9	증권	4	1.17
10	보험	4	1.12
11	기타	25	7.25
합 계		352	100.00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투자자 및 집합투자기구간의 관계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One IFC 15층 TEL) 1588-5533 http://www.kcgiam.com/
회사연혁	2008. 5 회사설립 2008. 7 자산운용업 본허가 2008. 7 메리츠종금 영업양수 2009.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인가 2010. 3 자본금 50억원 증자 2013.12 자본금 감소 무상감자(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2015.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2023. 8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로 상호변경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자본금	132.3억원
주요주주현황	㈜케이씨지아이 60%, HS화성 40%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

(2) 선관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요약 재무상태표>

구 분	제 18기말 2025.12.31	제 17기말 2024.12.31
자산총계	**80,325**	**69,721**
- 현금및예치금	**39,905**	**39,169**
- 유가증권	**34,013**	**24,042**
- 이연법인세자산	**234**	**1,564**
- 기타자산	**6,173**	**4,946**
• 미수수익	3,467	1,928
• 무형자산	1,075	1,079
• 기타	1,631	1,939
부채총계	**41,709**	**35,906**
• 예수부채등	41,709	35,906
자본총계	**38,616**	**33,815**
- 자본금	13,230	13,230
- 자본조정	-74	-74
- 기타포괄손익	-	-381
- 이익 잉여금	25,460	21,040
당기순이익	**6,004**	**2,010**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백만원)

구 분	제18기 2025.01.01~ 2025.12.31	제17기 2024.01.01~ 2024.12.31
영업수익	**24,519**	**17,384**
- 자산관리수수료	164	37
- 집합투자기구운용보수	16,789	10,750
- 집합투자증권 취급수수료	1,983	1,668
- 대출 중개·주선 수수료	48	-
- 유가증권매매익	4,534	3,833
- 이자수익 등	1,001	1,096
영업비용	**16,570**	**14,579**
- 임직원급여	9,323	5,440
- 복리후생비	976	1,005
- 건물임차료	365	366
- 전산운용비	1,487	1,397
- 기타제비용	4,419	6,371
영업이익	**7,949**	**2,805**
영업외손익	**-343**	**2**
세전이익	**7,606**	**2,807**
당기순이익	**6,004**	**2,010**

* 상기 요약 재무제표는 K-IFRS기준으로 작성함

라. 운용자산규모

[단위: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 부동산파생	특별자산및 특별자산파생	혼합자산및 혼합자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12,284	3,799	6,328	0	10,249	72	0	80	1,973	1,087	0	35,874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신탁업자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신탁업자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회사개요

회 사 명	㈜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 1 가) ☏ 1588-1111 www.hanabank.com
회사연혁	1991.7. 설립 1999.1. 통합 '하나은행' 출범 (충청은행/보람은행 합병) 2000.2. Allianz AG 전략적 제휴 체결 2002.12. 서울은행과 합병. 통합 '하나은행' 출범 2015.09.01 (주)하나은행과 (주)한국외환은행 합병(KEB하나은행)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2)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①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T.02-2168–0400 www.shinhanfundpartners.com
회사연혁	2000. 6 법인설립 2008. 5 신한은행 자회사로 편입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2) 주요 업무

①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KIS채권평가	이지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88(운니동 98-5) T.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여의도동) T.02-398-39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ONE CENTINEL 15층 T.02-3215-14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3층 (여의도동, CCMM빌딩)T.02-785-1410
회사연혁 (홈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www.egap.co.kr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1) 구성과 권한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ㄱ)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ㄴ)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ㄷ)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ㄹ)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

상의 수로 결의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①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하며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써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시행일 2015.1.1]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상기의 (3) 내지 (4)의 사유로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이내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인 매매회전율

③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에 해당하는 투자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④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
- 투자신탁의 명칭
- 투자대상자산(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함)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수익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 신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신탁계약의 변경과 해지에 관한 사항
-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산별 취득한도, 취득한도 초과시 해소방법 및 해소기한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93조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른 변경,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그 밖에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평가항목 및 배점기준</td><td>투자중개업자 선정 시 각 자산에 대한 평가항목은 조사분석서비스와 매매체결서비스로 분류하며, 운용담당부서에서 항목별 배점기준을 두어 평가한다.
<table>
<tr><th>구 분</th><th>조사분석서비스</th><th>매매체결서비스</th></tr>
<tr><td>배점기준</td><td>70%</td><td>30%</td></tr>
</table>
</td></tr>
<tr><td>평가방법</td><td>① 당사의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침」에 의한 조사분석서비스평가위원회에서 투자중개업자를 평가・선정한다. 이 경우 각 운용담당부서에서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해당 임직원 중에서 평가위원을 정한다.
② 조사분석서비스평가위원회의 평가, 선정은 분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평가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③ 당사는 거래 투자중개업자를 적절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td></tr>
</table>

주1) 2014.1.2에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펀드용어정리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배당소득	펀드운용시 증권(주식·채권 등)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또는 총보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판매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판매 및 관리 등 집합투자증권 매입, 환매 및 투자기간 중 지속적으로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고객의 지불하는 비용으로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성과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며,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이득	펀드운용시 증권(주식·채권 등)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차익을 말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50%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